

□ 메르스 대응 지침(4-1판) 주요 개정사항 요약

구분		내용
관련법령		◦ 감염병예방법('16.6.30 시행) 개정 내용 반영
사례정의		◦ 이 지침에서 '의심환자' 사례 정의와 감염병의 진단기준(고시)의 '의사환자'를 구체적으로 설명
유증상자 관리		◦ 유증상자(의심환자 아닌 경우)에 대해, - 수동감시 방법 보완(신고당일 및 감시종료 시 전화안내) - 유증상자용 안내문(부록) 마련
의심환자 대응	역학적 연관성 및 임상증상 구분에 따른 조치	◦ 국내 의심환자 기준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, 경증 호흡기 증상 을 보이고 ' 역학적 연관성 낮은(단순 중동방문) 경우 '는 관리 방향을 단순화시킴 - 검사횟수: 검사 1회 음성이면 퇴원 - 병상배정: 신고한 의료기관에 법정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상 있으면 배정 가능 - 접촉자 관리: 접촉자 조사 후 명단확보까지 시행하고 입력 및 통보는 대기
	검역 대응	◦ 대응 체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◦ 접촉자 구분 (탑승객, 승무원 등)에 따른 접촉자 설정 범위 세분화 ◦ 검역 대응 절차 현행화(이송 전 확인사항, 이송절차, 퇴원절차 등)
	의료기관 대응	◦ 신고한 의료기관의 음압병상 배정이 가능한 의심환자기준 제시 - 의심환자가 역학적 연관성 낮고(단순 중동방문), 경증 호흡기 증상인 경우 - 의심환자가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중증 상태 여서 이송이 어려울 경우 ◦ 의료기관 대응 시 외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입원 지원 방안 제시
	의심환자의 접촉자 관리	◦ 의심환의 접촉자에 대한 수동감시 방법 보완 및 안내문 마련
확진환자 대응		◦ 확진환자 대응 흐름 및 단계별 조치사항 현행화
		◦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- 의료기관종사자 중 무증상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시 검사* 시행 * 최종 노출일로부터 13일째 메르스 검사하여 음성이면 다음날 격리해제
민간 의료기관 검사		◦ 민간 의료기관 메르스 진단 검사 시행 및 검사 양성 시 대응 체계 마련
부록, 서식		◦ 개인보호구 신종호흡기감염병(비말공기를 통해 전파 가능한 호흡기바이러스; MERS-CoV 포함) 감염원의 전파 경로, 병원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보호구를 구분, 선택하도록 설명 추가(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제시) - 개인보호구 관련 학회 자문 의견 반영
		◦ 해외 여행객 및 의심환자 접촉자 안내 문자메시지 표준문안 추가 ◦ 민간진단검사(검사기관, 검사대상, 검체채취, 운송, 결과신고) 부분 추가 ◦ 메르스 관련 안내문* 및 관련 사이트 추가 - 중소병원/의원용 선별진료 및 신고 안내문 - 메르스 바로알기 안내문(한국어, 영어, 아랍어) ◦ 생활수칙 안내문(자가격리/능동감시/수동감시/유증상자용) 구분 등 추가, 보완 등 - 중동지역 방문 후 14일 동안 '자가모니터링' 필요 - '자가모니터링' 기간 중 증상이 있을 경우 '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먼저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국번없이 ☎ 1339)로 신고 ' 강조